

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4. 12. 17.>

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(제7조 관련)

항 목	세부 항목	가중치	내용별 (가중치)		비 고
이 용 편 의 성 (50)	가. 인접 우체국 과의 거리	10	시	읍·면	지도상 직선 거리
			3km 이상: 10	10km 이상: 10	
			2.5km 이상 3km 미만: 8	8km 이상 10km 미만: 8	
			2km 이상 2.5km 미만: 6	6km 이상 8km 미만: 6	
	1.5km 이상 2km 미만: 4	4km 이상 6km 미만: 4			
	1km 이상 1.5km 미만: 2	2km 이상 4km 미만: 2			
	0.5km 이상 1km 미만: 1	1km 이상 2km 미만: 1			
	0.5km 미만: 0	1km 미만: 0			
	특수지역은 별도 평가				
	나. 신청장소 주변여건	10	시	읍·면	
복합지역(빌딩, 상가, 주거) 10			읍·면 소재지: 10		
상가지역: 8					
잡단주거지역(6천 세대 이상) 6			주거지역: 6		
빌딩구 내: 4					
주거지역: 2		기타지역: 2			
다. 교통 여건	10	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: 2~4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 의 편리성: 2~4 위치식별의 용이성: 1~2			
라. 사무실 위치	10	지상 1층: 10 지상 2층: 7 지하 1층: 4 지상 3층(승강기를 설치한 경우):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: 0			
마. 건물의 소유 상태	5	본인 건물: 5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: 3			
바. 접근 편의성	5	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: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: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·장비 미설치: 1			
업무 수행 능력(50)		50	우정사업 이해도, 동종·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,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,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, 성실성,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		

합 계	100		
-----	-----	--	--

비고: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